

3. 의견 제출

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」 제정예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[우편번호: 30103,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(화학제품관리과), 전화 044-201-6809, 팩스 044-201-6786, 전자우편: joon2111@korea.kr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● 환경부공고제2020-563호

「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2일

환 경 부 장 관

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분리 운영되던 고시들을 통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. 또한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하고,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」으로 수정함.
- 나. 기존 「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」의 위해성 평가 후 평가등급별 조치사항에 대한 표 등 고시 규정을 본 고시 후반부로 이동하고 해당 고시를 폐지함.
- 다. 기능공간별로 수행하던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공간별, 자재별로 수행하도록 평가단위를 수정하여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.
- 라. 진동,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함.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.6.23.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환경피해구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대 시 사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방법

- 전자우편(이메일) : nogal99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823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

4. 그 밖의 사항

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 법령·정책/입법·행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(전화 044-201-68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568호

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,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2일

환 경 부 장 관

층간소음 피해사례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 이유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층간소음의 측정, 피해사례의 조사·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층간소음 등의 정의(안 제2조)
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층간소음, 전문기관, 공동주택, 관리주체, 전화상담, 방문상담, 소음측정 등 용어를 정의함

나. 전화상담의 절차 및 내용(안 제5조)

- 전문기관이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지역, 거주환경, 층간소음 현황 등을 조사하고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등을 상담하도록 함
- 전문기관은 상담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상담내용은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·보관하도록 함
- 전문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을 하도록 함.

다. 방문상담의 절차 및 내용(안 제6조)

- 입주자등은 전화상담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
-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을 방문하여 층간소음현황 거주자 생활형태 등 거주환경을 조사하고 상담을 하도록 함
- 전문기관은 방문상담일로부터 14일이내에 층간소음 방문상담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함

라. 층간소음측정의 절차 및 내용(안 제7조)

- 전문기관이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소음측정을 신청하도록 함
-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에 소음측정을 실시하도록 함